



정신보건분야 민간이전사업 감사 결과



감사위원회
[회계감사팀]

I. 개 요

□ 실 시 근 거

- 『아산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적용범위)
-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감독 등)

□ 감 사 개 요

- 대 상 기 관 : 가온누리, 보금자리, 좋은이웃
- 감 사 기 간 : 2018. 6. 25. - 7. 13.(기간 중 15일간)
- 감 사 범 위 : 2016. 1. 1. - 2018. 7. 31.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감 사 인 원 : 회계감사팀장 외 2인

□ 감 사 중 점 사 항

- 보조금,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예산 회계처리 적정 여부
- 각종 계약(물품, 용역) 및 지출 적정처리 여부
- 급여·수당 등 운영비 집행 현황
- 시설물, 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및 중요재산 관리 현황
- 각종 수입금 관리 및 세외수입 적정 처리 등 운영 전반

II. 감사결과

① 총평

- 보건행정과 소관 정신보건 분야 민간이전사업(보조금)에 대한 적정 사용 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 감독부서 보건행정과 공무원의 업무연찬 소홀 및 업무 미숙 등으로 지도·감독의 한계점 노출
 -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에 대한 공무원들의 업무 회피에 따른 잦은 인사 이동으로 전문성 확보 곤란
 - 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 지침 해석이 불명확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임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회계 처리 부적정 사례 발생
 - 운영법인과 산하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분리의 원칙 미준수에 따른 회계 처리 부적정 사례 발생
 - 후원금 관리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자의적 해석 및 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
 - 입소료 등 수익금에 대해 입소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자부담 인식이 강하여 직원 수당 등으로 지출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 발견
 - 반면, 사회복지시설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함에도 외부 공모 사업을 통해 정신재활시설의 입소자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모범적인 사례도 다수 발견됨

㉔ 지적사항 총괄(안)

(단위: 건, 원, 명)

합 계			변상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인원)		주의 (인원)
건수	금액	인원					
19	17,854,360	-	-	-	8 (17,854,360 / -)		8
/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조치
			1	-	2(일반)	-	-

Ⅲ. 감사결과 처분지시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원)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종 류	금 액 (인원)	비 고
계	19건	시정 8 주의 8 통보 2 개선 1	4,716,170 9,933,060 3,205,130	회수 여입 환급
	가온누리(5건)			
1	보조사업 실적보고에 따른 집행 잔액 등 반납 소홀	시정	705,840	회수
2	통신비 지급 부적정	시정	2,975,240	여입
3	종사자 4대 보험 및 세액 원천징수 처리 부적정	주의		
4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련	시정		
5	사회복지시설 보험 가입 관련	시정	3,870,000	여입
	보금자리(8건)			
6	보조사업 정산 보고 및 검사 소홀	주의		
7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간 회계 분리원칙 미준수	주의		
8	지출증빙 징구 부적정	주의		
9	예수금 관리 부적정	시정		
10	사회보험료 공제 부적정	시정	3,205,130 2,675,190	환급 회수
11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련	시정	3,087,820	여입
12	입소자 입·퇴소 및 종사자 배치 관련	주의 통보		

(단위:원)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종 류	금 액 (인원)	비 고
	좋은이웃(6건)			
13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및 퇴직적립금 운영계좌 관리 소홀	시정	1,335,140	회수
14	시설 생활자 유료 입소비 사용에 관한 사항	개선요구		
15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보고 관련	주의		
16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배치 관련	주의 통보		
17	급여 원천징수 업무 관련	주의		

2. 현지처분사항 일람표

(단위:원)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금액
계	“해당 없음”		

3. 수범사례

가. 농약안전보관함 제작 및 무료 배포 사업(가온누리)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6년 7월 ~ 2017년 6월
- 사업 예산 : 17,920,000원
- 수혜대상 : 정신장애인 및 농촌지역주민

□ 사업 내용

1년간의 DIY 목공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훈련이 된 회원들에게 전문적인 목공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안전보관함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자살원인을 예방하여 노인 자살률을 낮추고자 한다.

□ 기대 효과

- 작은 스트레스도 크게 받아들이는 정신장애인의 상실된 자존감 UP
- 정신장애인이라는 인식개선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
- 농어촌 지역의 자살률을 낮추는 효과와 소외된 계층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제공

□ 향후 계획

- 나무라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통해 일상에서도 사용 가능한 지속적인 작품 활동 예정
-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 가능한 목공 훈련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운영
- 역량강화 훈련을 통해 자격증 취득

나. 숲이 있어 건강한 보금자리 나눔숲 조성(보금자리)

□ 추진배경

- 정신장애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자연공간 마련
- 인근지역 주민들의 휴식처 제공 및 공간을 함께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 계기 마련

□ 사업개요

- 공사기간 : 2015년 2월 ~ 2015년 11월, 이후 지속 관리 중
- 주 관 : 산림청 녹색사업단
- 수혜자 : 연 1,500명(보금자리 입소자 및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
- 운영방법 : 기반공사 및 수목식재 후 지속적인 수목관리, 지역주민 초청 등 진행

□ 추진상황

- 보금자리 입소인원 상시 이용(체육 및 정서적활동-산책, 체조, 배드민턴, 게이트볼, 파크골프, 원예활동 등)
-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주민을 위한 초청행사 개최 (2회)
- 지원받은 나눔숲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나눔숲 조성사업지 우수 사례로 선정

□ 효과

- 자연공간에서 정신장애인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회재활 촉진
- 아름다운 환경 조성으로 이용자와 지역주민이 어울려 소통하는 나눔의 공간 활용
- 지역주민들이 정신장애인들과 개방된 나눔숲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의 통합에 기여

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 증진을 위한 강사활동 프로그램 (좋은이웃)

- 추진배경 : 정신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해 당사자의 긍정적인 경험을 토대로 강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스스로의 인권을 증진함.

□ 사업개요

- 운영일 : 2016년 7월 ~ 2017년 5월
- 주관 : 정신재활시설 좋은이웃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수혜자 : 좋은이웃 회원 8명
- 운영방법 :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아 운영

□ 추진사항

- 인권에 대한 지식을 향상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자기표현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가 연계를 통하여 empowerment 강화시킴.

-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 주민을 대상으로 당사자 중심의 강의활동을 실시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

□ 기대효과

- 찾아가는 정신보건현장학교를 통한 당사자 강사활동 증대
- 정신장애인의 긍정적 경험을 통한 희망고취
-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효과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보조사업 실적보고에 따른 집행 잔액 등 반납 소홀

【부 서 명】 보건행정과

【관계기관】 가온누리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705,840원(회수)

【지적내용】

가. 현 황

○ 정산보고 및 보조금 반납 현황

(단위: 원)

회계연도	정산보고		예금이자	보조금 계좌잔액	집행잔액 반납	
	일 자	정산잔액			일 자	금 액
2014년	2015.01.29.	788,632	1,581	3,110,553		-
2015년	2016.02.16.	554,560	5,314	3,770,433	2016.10.30.	3,208,710
2016년	2017.01.04.	480,961	941	481,902	2017.09.08.	481,900
2017년	2018.01.10.	703,360	2,486	705,848		-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및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실적보고)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에 의하면, 보조금은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정신재활시설 가온누리에서는
 - 상기 현황과 같이 2014~15년의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보조금 운영비 계좌를 사회복지법인(가온누리) 계좌에서 정신재활시설(가온누리) 계좌로의 변경시 일괄 납부하였으며, 2016년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는 2017.9.8. 납부하였고, 2017년 정산잔액 등 705,840원에 대하여는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시설의 운영비계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처분요구】

보건행정과장은

-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되지 않은 2017년 보조금 정산잔액(705,840원)을 회수하여 주시고, 향후 정산 검사 등 관련 절차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통신비 지급 부적정

【부 서 명】 보건행정과

【관계기관】 가온누리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2,975,240원(여입)

【지적내용】

가. 현 황

○ 휴대폰요금 연도별 지급내역

(단위:원)

연번	연 도	금 액	대 상 자	비고
	합계	2,975,241		
1	2015	919,430	시설장	후원금
2	2016	691,575	〃	〃
3	2017	1,085,336	〃	〃
4	~ 2018.4.	278,900	〃	〃

나.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의하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동 규칙 제41조의2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의 사용금지)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지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의하면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 운영비 및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사용가능 분야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 그러나, 정신재활시설 가온누리에서는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후원금으로 시설장 개인용도의 휴대폰 요금(단말기 할부금 포함) 2,975,241원을 지급하는 등 비지정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보건행정과에서는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보건행정과장은

- 시설장 개인용도의 휴대폰 요금으로 사용된 비지정 후원금(2,975,240원)을 사회복지시설 가온누리 비지정후원금 계좌로 여입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종사자 4대 보험 및 세액 원천징수 처리 부적정

【부 서 명】 보건행정과

【관계기관】 가온누리

【행 정 상】 주의요구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종사자 급여 원천징수 관리현황

(단위:원)

연번	연 도	건강보험 (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비고
합계		7,232,020	11,602,020	666,078	2,455,180	
1	2015	1,804,700	2,339,740	149,968	459,490	2명
2	2016	1,927,680	2,529,300	166,680	479,570	〃
3	2017	2,431,980	2,951,880	207,570	1,049,710	〃
4	~ 2018.5.	1,067,660	1,251,800	141,860	466,410	〃

나. 위법 · 부당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의하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

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납세의무가 있는 근로 소득자는 같은 법 제127조~129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지방세법」 제86조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각각 보험료의 100분의 50씩 부담하며, 동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에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하고,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에 장기요양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을 건강 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 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 소득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및 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 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정신재활시설 가온누리**에서는 매월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4대 보험료 및 소득세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월별 원천징수를 포함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면서도 공제 없이 급여를 지급한 후 근로자 개인에게 개인부담금에 해당하는 4대 보험액 및 세액을 별도로 입금 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감독기관인 **보건행정과**에서는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보건행정과장은

- 「소득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및 4대 보험액 등을 원천 징수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련

【부 서 명】 보건행정과

【관계기관】 가온누리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1. 법인과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계좌 분리 문제

가. 현 황

(단위 : 원)

구 분	소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월
후원금 수입 총액	36,509,783	8,932,324	10,822,324	12,509,547	4,245,588
법인후원액 (용도미지정*, B)	7,071,480	-	1,620,000	3,700,000	1,751,480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사용액(A)	11,323,530	-	4,301,790	5,521,740	1,500,000
초과 사용액(A-B)	4,503,530	-	2,681,790	1,821,740	-

* 용도미지정 : 가온누리(법인시설)에 후원된 총 금액 중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법인 산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

나.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제1항에 시장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 제2항에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칙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제3항에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르면 ‘13.11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취약 계층 복지 실태 기획 감찰」 결과에 따르면, 후원자가 법인과 시설을 동일체로 인식하여 시설입소자를 위한 목적으로 법인에 기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알리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정신재활시설 **가온누리**에서는
 - 후원자로부터 사회복지법인(가온누리)이 아닌 사회복지시설(가온누리)에 후원한다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면 사회복지시설 전용계좌로 후원금을 입금 받아야 함에도, 법인으로 후원한 금액과 사회복지시설 가온누리로 후원한 금액 전체를 법인 후원금 전용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 후원자들이 가온누리(시설, 법인)에 후원한 총 금액 중 법인으로 지정된 금액(7,071,480원)을 초과하여 법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장애인재활시설에 총 4,503,530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별첨 아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용 내역】

연번	지출일자	사용내역 (시설 회계장부 기재내역)	지출금액
	소 계		11,323,530
1	2016.09.28	재활한전보증료	225,000
2	2016.10.20	물탈	26,400
3	2016.10.21	철강C형강	24,970
4	2016.10.29	철강칼D 100.5두께2.3T	160,160
5	2016.10.30	종량제봉투100L 19장구입	32,300
6	2016.10.31	레미콘	1,255,320
7	2016.10.31	이체 수수료	500
8	2016.10.31	스티로폼	955,900
9	2016.10.31	바닥공사비	1,100,000
10	2016.11.10	레미콘 환불금	-418,440
11	2016.11.14	시멘트 10포	50,000
12	2016.11.14	백색목 무광외	106,480
13	2016.11.14	타일및 도기외	783,200
14	2017.01.20	작업장 전기요금1월	44,040
15	2017.01.24	작업장 전기증설공사신청	242,000
16	2017.02.16	에폭시 하도 투명 구입	279,400
17	2017.02.20	작업장 전기요금	46,970
18	2017.02.27	통합 4대보험	266,000
19	2017.04.05	직업재활시설전기공사	550,000
20	2017.04.1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전출금	500,000
21	2017.05.30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의 전출금	265,623
22	2017.05.30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의 전출금	234,377
23	2017.06.28	아산장애인직업재활 전출금	500,000
24	2017.07.31	직업재활시설 4대보험 가입착오발생 산재보험	30,740
25	2017.07.31	직업재활시설 4대보험 가입착오 고용보험	62,590
26	2017.08.21	직업재활시설 전출금	500,000
27	2017.09.26	아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출금	500,000
28	2017.11.29	아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출금	500,000
29	2017.12.22	직업재활 시설 전출금	1,000,000
30	2018.02.0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출금	500,000
31	2018.03.2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출금	500,000
32	2018.04.2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출금	500,000

2. 지정후원금 결산서 누락 문제

가. 현 황

연도	사업명	후원기관	지원금액	비고
	소 계		47,318,000	
2015년	나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	8,350,000	프로그램
	희망나눔사업	●●●	2,000,000	기능보강 비데, 에어컨
	취약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	1,200,000	
2016년	삼성디스플레이 지원 행복프로그램 1차 목공활동	◇◇◇	3,000,000	프로그램
	티움버스 테마지원사업	◆◆◆	1,770,000	프로그램
	2016년~2017년 농약안전보관함 제작을 통한 자살예방 사업 “나무랑 다함께 즐겁게”	□□□	14,000,000	프로그램
	취약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	1,000,000	
2017년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사업(정우*)	■ ■ ■	1,800,000	프로그램
	충남광역 한마음문화축제 누리고밴드	△△△	900,000	프로그램
	삼성디스플레이 지원 행복프로그램 2차 목공활동	○○○	3,000,000	프로그램
	IBK사랑의 밥차	▲▲▲	식사지원	프로그램
	나만의 가구제작 프로그램 (다이:롭)	○○○	5,000,000	프로그램
	2017년~2018년 희망나눔지원사업	●●●	4,298,000	기능보강
	취약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	1,000,000	

나.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7조(세입·세출의 정의)에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 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후원

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정신재활시설 **가온누리**에서는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결산서를 제출하면서 ○○○ 등 외부 후원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정후원금(47,318천원)을 누락한 채 후원금 수입 내역을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지정·비지정 후원금 구분 문제

가. 현 황

가온누리에서는 별첨(후원 신청서)과 같이 후원자가 구체적인 용도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지정후원금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나.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후원금을 지정·비지정후원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2, 별표4, 별표6, 별표8의 세출 “목” 및 “내역”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할 것을 정하고 있고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은 지정용도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 그러함에도, 정신재활시설 **가온누리**에서는
 - 별첨(지정후원금 신청서)과 같이 기탁서에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하지 않고 “가온누리 지정후원금 집행 내역서 용도로 사용됨에 동의함”으로 기재하고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집행내역을 첨부하여 지정후원금으로 구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리고, 보건행정과에서는

- 사회복지시설 가온누리에 상기와 같은 문제(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후원금 계좌 분리 문제, 지정후원금 결산서 누락 문제, 지정·비지정 후원금 구분 문제 등)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보건행정과장은

- 향후 운영법인에서 산하시설의 후원금을 함께 기탁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법인 가온누리와 산하 시설인 가온누리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분리하여 별도 개설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시고,
- 상기 현황과 같이 지정후원금이 결산서 수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시스템의 후원금 메뉴를 통해 후원금 수입·지출을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하시기 바라며,
- 후원금 기탁서 접수 시 사용용도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세출 “목” 및 “내역”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한 것에 한하여 지정후원금으로 처리하도록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사회복지시설 보험 가입 관련

【부 서 명】 보건행정과

【관계기관】 가온누리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3,870,000원(여입)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원)

보험명	계약자	피보험자	가입형태	1회보험료	납부액	환급액 (18.06.25 현재)
★★종합보험	☆☆	☆☆	적립식 상 품	100,000 (보장:19,943원/ 적립: 80,057원) 재원 : 후원금	5,900,000	3,870,000

※ 보험회사로부터 해지시 환급액을 산정한 것으로 실제 진행시 금액 차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제1항에 시장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르면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군·구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소멸식 상품을 가입토록 관리해 나가되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이 적립식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시설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운영비로 세입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관리감독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3년 ○○도 특정감사 결과 사회복지시설들이 ‘적립식’ 책임보험 상품 가입하여 만기 환급금 수령 후 부적절한 세입처리로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된 건을 안내하고 있다.

○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관명(정신재활시설 가온누리)으로 계약 및 피보험자를 지정해야 하며, 보험 가입 목적에 맞는 내용에 한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러함에도, 정신재활시설 가온누리에서는

- 후원금으로 사회복지시설 화재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소멸형 상품이 아닌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을 하였고,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법인 대표이사 개인으로 지정을 하였으며,
- 월 납입액 중 19,943원만이 화재 보장에 따른 납입 금액이고 80,057원은 적립을 위한 납입액으로 보험 가입 목적(화재보험)을 벗어나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리고, 보건행정과에서는

- 사회복지시설의 보험이 적립식으로 가입되게 하고, 피보험자를 법인대표이사 개인명의로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보건행정과장은

-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가입된 화재보험(해약금 3,870,000원)을 해약하여 사회복지시설 가온누리 비지정후원금 계좌로 여입하여 주시고, 향후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험 가입 시 소멸형 상품 및 계약자 및 피보

힘자를 기관명의로 가입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보조사업 정산 보고 및 검사 소홀

【부 서 명】 보건행정과

【관계기관】 보금자리

【행 정 상】 주의요구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정산 보고 및 검사 현황(2016년)

(단위: 원)

사 업 명	정산 주기	정산대상	신청보조금	당기정산금	정산 보고	정산 검사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월	2016. 1. ~ 3.	73,077,340	71,458,630	완료	승인
		2016. 4. ~ 12.	212,385,340	214,003,050	완료	접수 (미실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2016. 1. ~ 12.	10,830,000	10,830,000	완료	승인
정신보건시설 안전보험비	년	2016년	746,400	746,400	완료	접수 (미실시)

○ 운영비 지원 정산보고 및 계좌 내역(2015~2017년)

(단위: 원)

연도별	정산보고 잔액	계좌 잔고(연도 말일)	비 고
2015	- 347,051	3	불일치
2016	- 1,122,547	364	불일치
2017	883,966	0	불일치

나. 위법 · 부당내용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정산검사)에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16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에는 보장시설장은 매월 전월의 생계급여 집행실적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시설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15일까지는 전년도 생계급여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정신재활시설 보금자리에서는 생계비 등에 대하여 매월 정산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나 연간정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간 지급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운영비 지원에 대한 정산보고 내역과 계좌 잔고가 일치하지 않는 등 정산보고를 소홀히 하였으며,
- 아산시 보건소에서는 2016년 정신보건시설 운영비(4~12월) 및 안전보험비에 대하여는 정신재활시설 보금자리에서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정산보고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정산보고금액과 운영계좌 잔고가 일치하지 않는데도 정산검사를 완료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분요구】

보건행정과장은

- 향후 지방보조금 정산보고 누락, 계좌 잔고와의 불일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검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간 회계 분리원칙 미준수

【부 서 명】 보건행정과

【관계기관】 보금자리

【행 정 상】 주의요구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회계처리 혼용 사례

○ 법인사업자 명의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 독립성 및 책임성 저해

○ 법인대표의 시설 공용차량 공동사용

- 횟수 : '17년 20회, '18년 24회 (별첨1: 차량운행일지 참조)

- 사용목적 : 금융업무, 후원품 수령, 관계기관 방문 등

○ 신원보증보험 법인대표 공동 가입 (별첨2: 보험증권 참조)

- 가입연도 : '17년 ~ '18년

- 보험계약자: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

- 피보험자: 사회복지법인 ○○○

- 보험가입금액 : 150백만원

○ 단체 상해공제 법인대표 공동 가입 (별첨3: 상해공제 가입증서 참조)

- 가입연도 : '17년 ~ '18년

- 시설명/인원수 : 보금자리/7명(법인 대표이사 포함)

- 수익자 : 법정상속인

나.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재무·회계 운영의 기본원칙)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제6조(회계의 구분)에 따라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는 구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면서 2013년 10월 감사원 지적사항임을 안내하였다.

○ 그러나, **정신재활시설 보금자리**에서는

법인과 시설의 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위 사례와 같이 시설 종사자는 시설(보금자리)과 근로 계약하여 고용되었으나 4대 보험 및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법인 명의로 관리하여 사고(事故)시 회계운영의 독립성 및 법률적 채권을 담보할 수 없게 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운영 관리하는 시설 공용차량을 법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여 시설 독립의 원칙에 반하여 운영하였고, 법인 대표이사가 계약자이자 법인이 피보험자인 신원보증보험에 시설(보금자리) 종사자와 공동으로 가입하여 법적 수익권자를 불명확하게 하였으며, 단체 상해공제에도 법인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가입하는 등 회계분리 원칙을 미준수 하였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시설에서 일부 회계처리를 법인과 구분 없이 관리함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보건행정과장은

- 향후 운영법인과 산하 사회복지시설 간 회계 분리 원칙이 준수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지출증빙 징구 부적정

【부 서 명】 보건행정과

【관계기관】 보금자리

【행 정 상】 주의요구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물품구매 등 지출증빙 부적정 징구 현황(붙임1 참조)
 - 총 70건: 지출증빙 미징구 17건, 개인 현금영수증 징구 53건

나.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의하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지출은 지출 사무를 관리하는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하며,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 시에도 영수증 등 증빙 서류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그러함에도, 정신재활시설 보금자리에서는

[붙임1]과 같이 시설 내 소요물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거나 시설·장비를 수리·수선하면서 카드결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 지출증빙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53건에 대해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개인명의 현금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17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징구하지 않고 공급가액만을 지출하여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를 저해하는 등 회계처리를 투명하지 않게 하였으며, 감독기관인 보건행정과에서는 이에 대한 보조금 정산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보건행정과장은

- 향후 개인명의 현금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으로 회계 처리하거나,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징구하지 않고 회계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예수금 관리 부적정

【부 서 명】 보건행정과

【관계기관】 보금자리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예수금 개인 계좌 사용 현황

연번	계좌번호	계좌명	계좌 용도	비고
1	356-0686-7186-53	◇◇◇	4대 보험 일시보관용	
2	352-0462-9640-83	◇◇◇	퇴직연금 일시보관용	

나.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의하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정신재활시설 보금자리에서는

위와 같이 시설 종사자의 4대 보험 및 퇴직연금의 일시보관용 예수금 계좌를 시설장 개인명의 계좌에 관리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하였으며, 감독기관인 보건행정과에서

는 이에 대한 보조금 정산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보건행정과장은

- 사회복지시설 보금자리의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일시보관용 예수금 계좌를 기관 명의 계좌로 신규 개설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사회보험료 공제 부적정

【부 서 명】 보건행정과

【관계기관】 보금자리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5,880,320원(환급 3,205,130원 / 회수 2,675,190원)

【지적내용】

가. 현 황

○ 사회보험료 공제 현황

(단위 : 원)

‘15년 1월~’ 18년 4월			초과 공제 세부내역	
고지금액	공제금액	초과 공제액	본인 부담금	기관 부담금
117,189,670	123,069,990	5,880,320	3,205,130	2,675,190

나. 위법·부당내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등에 따라 사회보험 공단은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산정하고,

○ 「국민연금법」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 등을 문서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고지 받은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

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등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일시보관금 통장에 보관한 후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므로 정신재활시설 **보급자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고지된 보험료 금액대로 정확히 산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 상기 현황과 같이 감사 대상기간(2015년 1월 ~ 2018년 4월) 동안 사회보험 공단으로부터 고지된 금액보다 5,880,320원(본인부담금 3,205,130원, 기관부담금 2,675,190원)을 초과 공제하여 일시보관금 통장에 보관하고 있으며,
 -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여 일시 보관하는 통장을 기관 명의 통장으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에도 시설장 개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리고, **보건행정과**에서는
 - 사회보험 공제 및 통장 발급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분요구】

보건행정과장은

- 감사대상기간 동안 초과 공제된 5,880,320원 중 본인부담금(3,205,130원)은 해당 직원에게 환급하여 주시고, 기관부담금(2,675,190원)은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사회보험료 공제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련

【부 서 명】 보건행정과

【관계기관】 보금자리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3,087,820원(여입)

【지적내용】

1. 지정후원금 등 결산서 누락 문제

가. 현 황

(단위 : 천원)

연 번	연도	사업명	후원처	지원금액	비고
	소 계			30,532	
1	2015년	2014 ●● 워킹페스티벌 (아산지역 사회복지시설 컴퓨터지원)	○○○	970	●● 지원 컴퓨터 구입
2	2015년	15-16년도 희망 나눔 지원 사업	○○○	3,228	냉장고, TV, 컴퓨터구입
3	2015년	2015 사랑의 난방비 지원 사업	○○○	2,000	난방비
4	2016년	보금자리 건물 도장 사업	◎◎◎	5,000	건물 도장
5	2016년	개인의힘 지원사업	◇◇◇	1,000	종사자 힐링 지원금
6	2016년	2016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	○○○	12,000	옥상 및 발코니 방수 공사 사업
7	2016년	2016 사회복지사업 취약계층 자립 지원 사업	◆◆◆	584	에어컴프레샤구입
8	2017년	△△와 함께 하는 “2017행복프로그램”	□□□	2,000	생활관 도배 및 장판 시공
9	2017년	●● 나눔워킹 페스티벌 지정기탁사업 (아산시관내사회복지시설업무환경개선지원사업)	○○○	3,750	교육실 냉난방 환경개선사업

나.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7조(세입·세출의 정의)에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 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정신재활시설 보금자리에서는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결산서를 제출하면서 ○○○ 등 외부 후원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정후원금(30,532천원)을 누락한 채 후원금 수입 내역을 보고하였으며,
 - 같은 기간 동안 후원품 수입내역은 전산에 입력·관리하였으나, 후원품 사용내역은 입력하지 않아 결산서에 누락한 채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지정·비지정 후원금 구분 문제

가. 현 황

보금자리에서는 별첨(후원 신청서)과 같이 후원자가 구체적인 용도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지정후원금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나.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후원금을 지정·비지정후원금으로 구

분하고 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2, 별표4, 별표6, 별표8의 세출 “목” 및 “내역”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할 것을 정하고 있고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은 지정용도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 그러함에도, 정신재활시설 보금자리에서는
 - 별첨(지정후원금 신청서)과 같이 기탁서에 사용용도를 기재하지 않거나 “시설운영, 시설운영비 사용”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지정후원금으로 구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3. 후원금 지출 부적정

가. 현 황

○ 후원금 지출 부적정 현황

순번	지출일자	지출내역	금액
	소 계		3,087,820
1	2015-01-22	토지 신고비	387,820
2	2015-06-23	부지 증설 위탁비	300,000
3	2015-07-22	직원휴가비	1,200,000
4	2015-07-22	처우개선비	100,000
5	2015-09-25	명절위로금	500,000
6	2016-07-25	직원휴가비	600,000

나.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하고, 자산취득비는 토지·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장비 등은 구입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정신재활시설 보금자리에서는
 - 상기 현황과 같이 후원금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직원휴가비 및 보조금에서 지출되는 처우개선비·명절위로금으로 지출하였고, 법인 예산으로 지출해야 할 토지신고비·부지증설 위탁비를 지출하여 감사대상기간 동안 총 3,087,82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하였다.
- 그리고, 보건행정과에서는
 - 정신재활시설 보금자리에 상기와 같은 문제(지정후원금 등 결산서 누락 문제, 지정·비지정 후원금 구분 문제, 후원금 지출 부적정 등)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분요구】

보건행정과장은

- 상기 현황과 같이 지정후원금이 결산서 수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시스템의 후원금 메뉴를 통해 후원금 수입·지출을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하시기 바라며,
- 후원금 기탁서 접수 시 사용용도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세출 “목” 및 “내역”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한 것에 한하여 지정후원금으로 처리하도록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회복지시설 보금자리에서 상기 현황과 같이 비지정후원금으로 부적정하게 지출한 금액(3,087,820원)을 비지정후원금 계좌로 여입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입소자 입·퇴소 및 종사자 배치 관련

【부 서 명】 보건행정과

【관계기관】 보금자리

【행 정 상】 주의요구 / 통보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1. 입소자 입·퇴소 관련

가. 현 황

○ 3년 초과 입소자 현황

연번	성명	입소일자	퇴소일자	입소일수	초과일수	비 고
1	☆☆☆	2013-08-20	2016-09-13	1,120	25	
2	★★★	2015-01-19	2018-03-01	1,137	42	
3	○○○	2010-11-03	2015-02-03	1,553	458	
4	○○○	2015-02-06	2018-04-18	1,167	72	
5	●●●	2013-01-23	2016-06-02	1,226	131	
6	◎◎◎	2013-10-14	2016-11-23	1,136	41	
7	◇◇◇	2014-11-27	2017-12-07	1,106	11	
8	◆◆◆	2012-01-30	2015-04-02	1,158	63	
9	◆◆◆	2015-04-06	2018-05-28	1,148	53	
10	□□□	2014-10-31	2017-12-07	1,133	38	
11	■ ■ ■	2014-01-29	2017-03-02	1,128	33	
12	△△△	2012-11-09	2015-12-23	1,139	44	
13	▲▲▲	2014-12-22	2018-02-07	1,143	48	
14	▽▽▽	2012-02-02	2015-12-04	1,401	306	
15	▼▼▼	2012-02-01	2015-03-02	1,125	30	
16	▼▼▼	2015-03-04	2018-04-06	1,129	34	

○ 30일 초과 입원자 퇴소 미조치 현황

연번	성명	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일수	초과일수	퇴소일
1	○○○	2016-09-23	2016-10-24	32	2	2016-12-07
2	●●●	2016-09-23	2016-10-24	32	2	
3	●●●	2016-10-25	2016-11-25	32	2	
4	●●●	2018-03-02	2018-04-10	40	10	2018-04-10
5	◎◎◎	2016-10-04	2016-11-03	31	1	2017-12-07
6	◇◇◇	2016-10-18	2016-11-17	31	1	2018-02-07
7	◆◆◆	2018-04-09	2018-05-28	50	20	2018-05-28

○ 무연고자 입소 연장 심의 현황

연번	성명	입소일자	퇴소일자	입소일수	개최일자	오류내역
1	○○○	2012-09-10	2015-05-12	974		
2	○○○	2015-05-15	2017-06-23	770	2015.06.30.	정신재활시설 담당공무원 심의 미참여
3	●●●	2014-05-19	2017-06-13	1,121		
4	●●●	2017-06-28			2017.06.26.	정신재활시설 담당공무원 심의 미참여

나. 위법·부당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제3항에 종사자 수·자격,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5항에 따른 별표 9 및 「2018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등이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중 입소생활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와의 입소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입소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고령,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소자의 퇴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입소자가 무연고자이거나 보호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를 초과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개최하는 운영위원회에는 인권전문가와 해당 시·군·구 소속 정신재활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심의 시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은 입소자가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중간에 퇴원 없이 연속적으로 30일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와 1회 외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소자를 퇴소 조치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정신재활시설 보금자리에서는

- 입소자가 3년을 초과하면 퇴소 조치하여야 함에도 ☆☆☆외 12명이 최소 11일에서 최대 458일까지 초과하여 생활 중 입에도 조치하지 않았고,
- 입소자 중 연속하여 30일 이상 입원하는 사람은 퇴소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최소 1일에서 최대 20일 까지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보건행정과에서는

- 상기와 같이 ○○○외 1명이 무연고 등의 사유로 3회를 초과하여 입소 연장하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심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함에도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정신재활시설 보금자리의 입소자 입·퇴소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2. 종사자 배치 관련

가. 현 황

○ 종사자 배치 현황(2018. 4월 현재)

합 계	시설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조리원	비 고
6	1	1	2	2	-	조리원 미배치

○ 전년도 연평균 입소현원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미제출	24명	22명

○ 입소현원 관리 현황

입소현원 명부 제출 여부	입소자 입원 현황 제출 여부	입소자 외박 현황 제출 여부	비 고
부	부	부	

나. 위법·부당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제3항에 종사자 수·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항 제4호에 따른 별표 8 및 「2018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의 종사자 수는 시설의 장 1명,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인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한다.) 그리고 정신건강전문요원·재활활동요원·재활활동보조원은 입소정원 15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2018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지원대상 종사자 수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입소현원수는 전년도 연평균 입소현원수(전년도 1월

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입소현원수를 모두 더하여 12로 나눈 값)를 계산하여 이를 종사자 지원기준이 되는 입소현원수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연평균 입소현원수는 매년 1월말까지 산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보건행정과**에서는

- 예산상의 문제로 인력 충원을 부족하게 배치함에 있어 조리원은 15인 이상 시설이면 입소현원 변동과 무관하게 배치해야 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입소현원 변동에 따라 지원되는 종사자 수가 변동되는 재활 활동요원 및 재활활동보조원을 지원하고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 2017년 연평균 입소현원수 산정결과(22명)에 따라 종사자 배치기준(수)이 6명에서 5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6명이 배치 되어 있으며,
- 운영비 지원 및 종사자 배치 기준의 중요 요소인 입소현원수 산정과 관련된 입소명단·입원현황·외박현황 등을 보금자리로부터 매월 제출 받아야 타당함에도 그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분요구】

보건행정과장은

- 상기(3년 초과 입소자 현황, 30일 초과 입원자 퇴소 미조치 현황)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재활시설 입소자의 입·퇴소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무연고 등의 사유로 3회를 초과하여 입소자의 입소를 연장하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심의 회의에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또한, 종사자 배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종사자 관리에 대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라며, 운영비 지원 및 종사자 배치 기준의 중요 요소인 입소현원수 산정과 관련된 입소명단·입원현황·외박현황 등을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보고 받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및 퇴직적립금 운영계좌 관리 소홀

【부 서 명】 보건행정과

【관계기관】 좋은이웃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1,335,140원(회수)

【지적내용】

가. 현 황

○ 운영비 보조금 계좌 현황(2017년)

(단위: 원)

정산보고 잔액	발생이자	계	비 고 (계좌 잔액)
761,910	5,557	767,467	767,473

○ 퇴직금 예수금 운영 계좌 현황

(단위: 원)

계좌번호	일 자	계좌 잔액	비 고
301-0072-6541-91	2017. 12. 24.	567,670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정산검사)에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16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에 의하면, 보조금은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 정산서와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나 퇴직금 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아산시 보건소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정산보고를 하였으면 사업연도 종료에 따른 정산검사를 실시 보조금을 확정하여,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하여는 반납을 받아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으며,
- 정신재활시설 좋은이웃에서는 퇴직금 예수금 운영계좌에 2011년 이전의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과 발생이자 등 사용계획이 없는 567,67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분요구】

보건행정과장은

-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되지 않은 2017년 보조금 집행잔액(767,470원)과 퇴직금 계좌 잔액(567,670원)을 회수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

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검사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시설 생활자 유료 입소비 사용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보건행정과

【관계기관】 좋은이웃

【행 정 상】 개선요구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정신재활시설 좋은이웃은 정부보조금, 후원금, 법인전입금(자부담), 입소비용수입 등으로 운영되며, 그 중 시설 생활자의 유료 입소비를 재원¹⁾으로 전체 종사자 10명 중 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계장 1명에 대하여 직책수당 각 40만원, 20만원, 10만원, 5만원과 그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 부담금으로 [붙임1]과 같이 2015년 이후 2018년 4월 까지 47,918천원을 사용하였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품, 위크숍 비용, 회의비(식비), 업무추진비성 경비 등으로 [붙임2]와 같이 7,969천원을 지출하였다.

나. 관련 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 「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라 정신재활시설 운영비의 공통 지원권고 기준으로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입소·이용시설 지원권고 기준으로 시설 종사자에 대

1) 2017년 기준 입소 부담금 수입으로 49,133천원 정수

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해당 지침의 기본급 권고 기준 및 종사자 수당기준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고,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외에 수당기준으로는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으로 구분하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원권고 기준 이상으로 지급할 때에는 시·군·구의 지방비 예산, 자부담 등으로 시설의 규정에 따라 야간근무 등에 대한 별도의 수당 및 그에 따른 사회보험, 퇴직금의 초과비용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지침 회계관리에 대한 행정사항으로 시설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수익금, 후원금, 입소·이용료 등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예산(보조금, 입소료 수입금, 후원금 등) 집행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8조(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은 보조사업자 등이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 재활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자부담(법인전입금)을 요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비용의 징수)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법」 제81조(비용의 징수)에 따라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²⁾을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의 경우는 보장시설 규모별로 별도 지원³⁾ 받도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시설장은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지급액 수준을 고려하여 입소(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정수준(시설장은 보장시설 수급자 평균 월급여지급액 이상)의 입소료를 책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 유료 생활자의 입소요금은 시설 생활에 필요한 실비 부담금으로 보아야 하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입소자들의 직접적인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지침에 표기된 “유료입소료 수입에 의한 운영비를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라 함은 시설 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조리 보조원, 청소원 등 별도 인력비용 또는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보조원 등의 인건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사시설 관련 규정인 보건복지부령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을 살펴보면, 비용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급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입소요금을 받고 입소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입소요금은 종사자의 인건비 등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고 명시하여 입소자로부터 징수한 비용에 대하여 직원 인건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계산에 의한 식대 포함 월 최저보장수준 범위 내 징수하며, 좋은이웃의 경우 월 301,000원 징수(2018년 기준)

3) 좋은이웃의 경우 입소자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시설로 2018년 기준 수급자 1인당 월 222,950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수급자 급여 지급액은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신발비, 취사연료비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타 시·도인 서울특별시 사례를 살펴보면, 정신재활시설 108개소를 지원하면서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이용(입소)비용은 시설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재활 프로그램 사업비 등 운영비(임시적 보조인력 인건비 가능)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용료 사용 금지 항목으로는 보조금 지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추가지급, 종사자 교육훈련비, 기타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와 연관성이 없는 비용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재활시설 좋은이웃에서는 유료 입소비용으로 생활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입소부담금 수입을 법인전입금이 아닌데도 시설의 “자부담” 목으로 세입예산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 지원권고 기준 이상으로 지급할 때에는 지방비 예산 또는 자부담으로 시설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수당 등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재원(자부담) 확보 및 자체 운영규정에 수당 지급 세부기준이 없음에도 시설 주요 보직자에 대한 직책수당⁴⁾ 및 그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 부담금을 세출예산에 편성⁵⁾하여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 까지 47,918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품, 워크숍 비용, 회의비(식비 등), 대외 업무추진비성 경비 등에 대하여 [붙임2]와 같이 7,969천원을 지출하는 등 입소자 부담 수입금을 소속 종사자를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입소(이용)자의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최소한도로 징수하여

4) 원장 40만원, 사무국장 20만원, 팀장 10만원, 계장 5만원을 매월 지급

5) 도비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분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포함

연간 부족한 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재활 프로그램 사업비 등에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입소비 잔액에서 직원 연말정산 환급금을 선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보건복지부 평가 인센티브 예산을 입소비 계좌에서 혼용하는 등 최근 3년 간 입소비(생계비 포함) 잔액을 평균 13,301천원 과다 이월⁶⁾ 관리하였으며, 보건행정과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보건행정과장은

- 시설 입소자 부담금 수입에 대하여 시설 입소자의 직접적인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직원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6) 2015년 12,338천원, 2016년 12,253천원, 2017년 15,303천원 이월

[붙임1] 2015 ~ 2018년 유료 입소비의 직원 인건비 등 사용내역

(단위:원)

연도	성명	직책수당 (직책보조비)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사회부담금	비고
합 계		34,000,000	1,770,770	7,953,706	4,194,520	총계 47,918,996
2015	○○○	4,800,000	0	2,661,150	0	월별 - 시설장: 400,000 - 사무국장: 200,000 - 팀장: 100,000 - 계장: 50,000
	◎◎◎	2,400,000	150,710			
	◇◇◇	1,200,000	97,670			
	◆◆◆	1,200,000	124,820			
	□□□	600,000	52,330			
2016	○○○	4,800,000	0	2,436,466	2,197,230	
	◎◎◎	2,400,000	258,360			
	◇◇◇	1,200,000	129,120			
	◆◆◆	1,200,000	120,510			
	□□□	600,000	51,270			
2017	○○○	4,800,000	0	2,249,820	1,565,160	
	◎◎◎	2,400,000	258,360			
	◇◇◇	1,200,000	129,120			
	◆◆◆	1,200,000	120,510			
	□□□	600,000	51,270			
2018	○○○	1,600,000	0	606,270	432,130	
	◎◎◎	800,000	97,580			
	◇◇◇	400,000	57,400			
	◆◆◆	400,000	53,810			
	□□□	200,000	17,930			

※ 처우개선비 분 사회보험부담금 및 퇴직금 포함

[붙임2] 2015 ~ 2018년 유료 입소비의 직원 포상금품 등 사용내역

(단위:원)

연번	지출일자	계정과목	적 요	지출금액
1	2015-04-22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2	2015-04-22	기관운영비	방울토마토 외 7종 구입	45,880
3	2015-05-18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4	2015-06-19	기관운영비	운영위원회 식사비	63,000
5	2015-06-25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6	2015-07-08	회의비	다과비(상반기 사업평가)	21,970
7	2015-07-08	회의비	다과비(상반기 사업평가)	8,250
8	2015-07-09	회의비	식사비(상반기 사업평가)	230,000
9	2015-07-22	기타운영비	숙박비(2015년 직원교육 및 연수)	260,000
10	2015-07-22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11	2015-08-24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상품비	100,000
12	2015-09-15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상품비	100,000
13	2015-09-23	기관운영비	식사비 (운영위원회)	90,000
14	2015-10-23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15	2015-11-24	회의비	다과비(2015년 하반기 사업평가)	102,650
16	2015-11-25	회의비	1일차석식(2015년 하반기 사업평가)	27,420
17	2015-11-25	회의비	1일차석식(2015년 하반기 사업평가)	61,580
18	2015-11-29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19	2015-12-07	기획사업비	우수직원 상품비(송년행사)	200,000
20	2015-12-23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상품비	100,000
21	2016-01-21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22	2016-01-25	기관운영비	2015년 고액기부 후원자 선물비	80,000
23	2016-01-27	기타운영비	식비(좋은이웃 직원 단합대회)	220,000
24	2016-03-03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25	2016-03-21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26	2016-04-19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90,000
27	2016-04-19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
28	2016-04-29	기타운영비	식비(직원단합대회)	245,700
29	2016-05-25	기타후생경비	Best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연번	지출일자	계정과목	적 요	지출금액
30	2016-06-24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31	2016-07-06	회의비	자두 외 22종 구입(2016년 상반기 사업평가 및 직원교육)	102,830
32	2016-07-06	기타운영비	식비(2016년 상반기 사업평가 및 직원교육)	16,810
33	2016-07-07	기타운영비	교통비(2016년 상반기 사업평가 및 직원교육)	80,000
34	2016-07-07	기타운영비	숙박비(2016년 상반기 사업평가 및 직원교육)	150,000
35	2016-07-08	기타운영비	식비(2016년 상반기 사업평가 및 직원교육)	154,000
36	2016-07-08	기타운영비	활동비(2016년 상반기 사업평가 및 직원교육)	44,600
37	2016-07-13	기관운영비	식비(3차 시설운영위원회)	60,000
38	2016-07-26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39	2016-08-24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40	2016-09-23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41	2016-10-25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상품비	100,000
42	2016-10-25	기타운영비	식비(좋은이웃 직원 단합대회)	189,000
43	2016-11-22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상품비	100,000
44	2016-12-14	회의비	다과비(2016년 하반기 사업평가)	65,740
45	2016-12-16	회의비	식비(2016년 하반기 사업평가회)	64,000
46	2017-01-23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상품비	100,000
47	2017-02-09	기관운영비	식사비(1차 운영위원회)	70,000
48	2017-02-27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49	2017-03-22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50	2017-04-24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51	2017-05-30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52	2017-06-21	기타후생경비	Bse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53	2017-07-12	회의비	다과비 (상반기 사업평가)	30,210
54	2017-07-13	회의비	식비 (상반기 사업평가)	124,000
55	2017-07-26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56	2017-08-16	기관운영비	식사비 (3차 시설운영위원회)	60,000
57	2017-08-23	기타운영비	식비 (2017년 직원교육 및 연수)	171,880
58	2017-08-25	기타운영비	식비(2017년 직원교육 및 연수)	71,800

연번	지출일자	계정과목	적 요	지출금액
59	2017-08-25	기타운영비	숙박비 (2017년 직원교육 및 연수)	150,000
60	2017-08-25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61	2017-09-22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62	2017-10-26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63	2017-11-21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64	2017-11-28	기획사업비	우수후원자 상품비 (송년행사)	50,000
65	2017-12-04	기획사업비	우수직원 상품비 (송년행사)	200,000
66	2017-12-06	기관운영비	4차 시설운영위원회 식사비	70,000
67	2017-12-13	회의비	엄마손파이 외 11종 구입 (2017년 하반기 사업평가)	69,960
68	2017-12-15	회의비	식비 (2017년 하반기 사업평가)	199,000
69	2017-12-28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70	2018-01-25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71	2018-01-29	기타후생경비	직원 포상비(민경진)	100,000
72	2018-02-21	기관운영비	1차 시설운영위원회 식사비	49,000
73	2018-02-23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74	2018-03-13	기관운영비	식비 (기관 방문홍보)	16,000
75	2018-03-20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76	2018-03-27	기관운영비	식비 (기관 방문홍보)	14,000
77	2018-04-25	기타후생경비	티셔츠 구입 (단체복)	340,000
78	2018-04-26	기타후생경비	Best Partner 포상 상품비	100,000
합 계				7,969,280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보고 관련

【부 서 명】 보건행정과

【관계기관】 좋은이웃

【행 정 상】 주의요구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후원품 전산 입력 현황

사 용 일 자	사 용 내 역	사 용 처	결연후원 품여부	수 량	단 위	상당금액	비 고
2017-01-06	회원간식용	회원간식용	N	3	박스	60,000	
2017-01-06	회원간식용	회원간식용	N	3	박스	30,000	
2017-01-06	회원식사용	회원식사용	N	2	박스	20,000	

※ 사회복지시설시스템상 품목은 입력되어 있으나, 전산상의 문제로 사용내역에 품목을 입력해야 함

○ 후원금 수입내역 전산 미입력(전산 보고 누락) 현황

(단위 : 천원)

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144,724	37,143	68,043	39,538	

※ 수기로 작성하여 보고

○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오류 내역

(단위 : 천원)

해당연도	금액	보고항목	정정항목	사용내역
2017년	11,000	후원금	법인전입금	변호사 수입비용 (잡지출)

※ 좋은이웃에서 전산에 재원을 후원금으로 오류 입력

나. 내 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며,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력한 보고서도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정신재활시설 **좋은이웃**이 감사대상기간(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동안 제출한 결산서를 살펴보면
 - 3년간 후원금 수입(144,724천원)을 사회복지시설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지 않아 시스템을 통해 결산서를 제출시 수입내역이 누락되었으며,

- 법인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은 전산에 “법인전입금” 재원으로 입력해야 하는 함에도 “후원금” 으로 입력하여 후원금에서 지출할 수 없는 잡지출(변호사 수입료)로 지출한 것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리고, 보건행정과에서는

- 좋은이웃에서 후원품 사용내역에 후원품목을 입력하지 않고 “회원 간 식용, 회원 식사용” 등으로 표기를 하여 구체적으로 무슨 후원물품을 사용했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파악할 수 없도록 보고를 받았고
- 후원금 수입내역 전산입력 누락, 재원 입력 오류에 따른 후원금 지출 불가 항목 지출 보고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분요구】

보건행정과장은

- 상기 현황과 같이 후원금이 결산서 수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시스템의 후원금 메뉴를 통해 후원금 수입·지출을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하시기 바라며,
-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출한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후원물품 사용내역, 후원금 지출불가 항목 여부 등)하여 후원금 수입·지출에 대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배치 관련

【부 서 명】 보건행정과

【관계기관】 좋은이웃

【행 정 상】 주의요구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종사자 배치 현황(2018. 4월 현재)

합 계	시설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관리직	조리원	비 고
10	1	2	3	3	1	-	조리원 미배치

○ 관리직 대비 기능직 기본급 현황

구 분	관리직	기능직(조리원등)	차액	비 고
11호봉	2,337,200	2,236,600	100,600원	2018년 급여 기준

※ 2018년 현재 좋은이웃에 근무중인 관리직 기준 작성

나. 위법·부당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제3항에 종사자 수·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항 제4호에 따른 별표 8 및

「2018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 중 종합시설의 종사자 수는 시설의 장 1명,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인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한다.) 그리고 정신건강전문요원·재활활동요원·재활활동보조원은 입소정원 10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보건행정과에서는

정신재활시설 좋은이웃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기능직(조리원) 대신에 기준에 없는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보건행정과장은

- 종사자 배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종사자 관리에 대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라며,(통보)
-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이 준수되도록 업무 연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급여 원천징수 업무 관련

【부 서 명】 보건행정과

【관계기관】 좋은이웃

【행 정 상】 주의요구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변경 전 업무 처리(기존)

통장명	운영비		예수금		운영비
업무처리 방식	사회보험 개인부담금 등 원천징수	→	- 개인부담금 원천징수액 입금 - 사회보험 납부일에 운 영비 통장으로 재입금	→	- 사회보험 개인부담금 입금 - 사용자 부담금 포함하여 지출

※ 운영비로 재입금시 회계처리 미실시

○ 변경 업무 처리(향후)

통장명	운영비		예수금
업무처리 방식	- 사회보험 개인부담금 등 원천징수 -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 지출 (매월 25일)	→	- 개인부담금 등 원천징수액 및 사용자부담금 입금(매월 25일) - 다음달 10일까지 예수금 통장에서 사회보험 공단에 납부 처리

나.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조(목적)에 이
규칙은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2018년 좋은이웃 운영규정」의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원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신재활시설 좋은이웃에서는

- 급여 지출 시 원천징수 공제액(사회보험 개인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을 예수금(일시보관 통장) 계좌에 입금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관 후 해당 계좌에서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 원천징수액(개인부담금)을 예수금 통장에 입금하고 이를 납부일에 운영비 통장으로 재입금하여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납부함으로써 이미 지출된 원천징수액(개인부담금)이 불필요하게 여입되는 등 회계 처리의 명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그리고, 보건행정과에서는

- 상기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분요구】

보건행정과장은

-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여 지출시 원천징수 공제액과 사회보험부담금을 예수금(일시보관 통장)으로 지출한 후 해당 통장에서 다음달에 직접 납부되도록 사회복지시설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